






# 기 안 용 지

부서  
14  
22

1962. 10. 16

|   |   |   |   |       |     |   |     |
|---|---|---|---|-------|-----|---|-----|
| 자 체   |  | 기안처   | 건설국관리과  | 전화번호  | 460 | 근거서류집수일자  |     |
| 통 제   |   |   | 크 령 기   |       |     |   |     |
| 수 상   | 담 임   | 관 리 과 장   | 전 설 국 장 부   | 시 장   | 시 장 |   |     |
|   |  |  |  | 전 결   |     |  |     |
| 관 계 판   | 토 목 과 장   | 조 강 과 장   |   |       |     |   |     |
| 서 명   |   |   |   |       |     |   |     |
| 기 년   | 안 일   | 1962. 10. 16  | 시 행   | 년 월 일 |     | 보 존   | 한   |
| 분 기   | 류 호   | 13312   | 전 체 통 제   |       | 중 결 | 정 서   | 기 장 |
| 경 수 참   | 유 신 조   |   |   |       | 발 신 |   |     |
| 제 목   |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  |   |   |       |     |   |     |
| <p>1. 황신동 ~ 신광동간 도로확장공사 및 남산 후암동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을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 조정하고자 함.</p> <p>가. 황신동 ~ 신광동간 도로확장공사</p> <p>(1) 총공사비 25,452,340</p> <p>(2) 부과총액 5,090,468 (공사비 20%)</p> <p>(3) 감면액 162,094 (구례제 14조 의거)</p> <p>(4) 부과액 4,428,374</p> <p>(5) 납입자 추산 156명</p> <p>나. 남산 ~ 후암동간 포장공사</p> |   |   |   |       |     |   |     |

(1) 총 공사비 2,295,120

(2) 부과총액 988,536 (공사비  $\frac{30}{100}$ )

(3) 감면액 282,14 (조례 제 13조)

(4) 부과액 706,392

(5) 납입자 陳相근 외 125명

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718 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환수조례 제 2조의  
취정에 의하여 다음 코선의 도로 수익자 부담금  
을 부과 한다.

서기 196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은 태 일

1. 공사 시공로선명 향신동~신광동간 도로 확장공사

2. 공사의 종류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3. 공사 착공년월일 1961. 5. 30

4. 공사 준공년월일 1962. 5. 20

서울특별시

35-2 35

273

5. 총공사비 25,452,340

6. 부담금 총액 5,090,468

7. 부의 구별 창신동, 함민동

8. 부의 방법 일시 부의

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기안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규례 제2호의  
취정에 의하여 다음 로선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부의 한다.

서기 1962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 권태원

1. 공사시공로선명 남산~후암동간 포장공사

2. 공사의 종류 포장공사

3. 공사착공년월일 1961. 6. 23

4. 준공년월일 1961. 9. 15

5. 총공사비 4,295,120

6. 부담금총액 988,536

서울특별시

